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1996. 10.

제 출 자 구 미 시 장

1. 의결주문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적용법을 법률에 맞게 보완
- 규격봉투에 상업광고 시행 근거 마련

3. 주요 골자

- 조례 명칭을 법률용어에 맞게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로 수정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명확한 구별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 방법 명시
-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규격봉투 제작시 상업광고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재활용품 종류에 스티로폼을 추가 지정

4. 조례내용 : 붙임과 같음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중제1호및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폐기물"이라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상폐기물"이라함은 법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제2조이 규정의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제4호중 "일반폐기물중"을 "폐기물중"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시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3조제2항중 "법제12조"를 "법제13조제1항"으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4조의 조제목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법제17조"를 "법제26조제1항"으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비용을 일반폐기물"을 "비용을 폐기물"로 한다.

제5조 이 조제6항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가성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재활용가능쓰레기"를 "재활용가능폐기물"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조치) ①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생산·공정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제외한 식량,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배출되는 성상이 생활계폐기물인 것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지 않고 자기수집·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 운반용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거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처리비는 [별표 1]의 일시적 다량배출물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7조의 조제6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주민에게 공개하고 농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 또는 홍보물을"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한다.

제9조제5항중 "제9조제2항이"를 "제2항의"로 하고 "[별표3]와"를 "[별표3]과"로 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 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시장과 광고주와 별도계약에 의한다.

제11조의 조제특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법제13조제4항의"를 "법제13조제3항의"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1호서식]과 [별지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5,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품 명	구 격	수 수 료
일시적다량폐기물	톤	15,000 원
냉 장 고	500 ℓ 이 상 300 ℓ 이 상 300 ℓ 미 만	8,000 원 6,000 원 4,000 원
텔 레 비 전	25 인치 이 상 25 인치 미 만	5,000 원 3,000 원
세 탁 기	모든규격	4,000 원
메 이 콘	264 m ³ 이 상 66 m ³ 이 상 66 m ³ 미 만	8,000 원 5,000 원 3,000 원
가스오븐렌지	높이 1 M 이 상 높이 1 M 미 만	4,000 원 2,000 원
탈 수 기	모 든 규 격	2,000 원
공기정정기	높이 1M 이 상 높이 1M 미 만	4,000 원 2,000 원
잠 농	120cm 장 1 1 쪽 90cm 장 1 1 쪽	15,000 원 10,000 원
쇼 파	대형 6 인용 소형 4 인용	8,000 원 5,000 원
책 상	양수·대형 편수·소형	5,000 원 4,000 원
식 탁	6 인용 이 상 6 인용 미 만	5,000 원 4,000 원
퍼 아 노	어프라이터 그 랜 드	10,000 원 15,000 원
보 일 러 동	대 중 소 중 소	8,000 원 5,000 원 3,000 원
캐 버 넷	모든규격	4,000 원
침 대	2 인 용 1 인 용	8,000 원 5,000 원
폐 타 미 어	대 중 소 형(size 200이상) 형(size 16 - 19) 형(size 15까지)	6,000 원 4,000 원 2,000 원
기타 가전제품 및 사 우 용 품	대 중 소 중 소	5,000 원 4,000 원 2,000 원

(주) 상기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목미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레이프, 철틀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기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송 부	목 목	배 출 요 령
3. 병 류	- 음료수병, 기 타병 - 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조 등 이물질은 넣지 않것. * 맥주, 소주병은 슈피에 팔 수 있음. - 물로 행군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 철 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철, 알루미늄,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층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뒤와 기름
5. 플라스 틱류	- PET병 - 합성수지용기 류 - 일빈가식용 생칠용분류 스티로폼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밀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플라스틱 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미물질 및 부착상표등을 완전히 제거한후 투병케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생선상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바꾸고 모르 깨 솟이 행구어 배출 - 「기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 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제95-93호, '95.8.5)」에 의하여 제조자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냉장고,세탁기,에어콘디셔너,전자렌지,퍼스날컴퓨터 제품와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재를 제조자등이 회수,처리토록 하여야함. ※1회용 커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폐부자와 이불이 붙어 있거나 타제질(PE,PP)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농지역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제9조 제5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 미 시 문 장 쓰레기봉투(5~10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의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이 봉투는 동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구미시청 폐기물관리과 (전화 : 50-5191)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 미 시 문 장 쓰레기봉투(5~10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수집하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농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구미시청 폐기물관리과 (전화 : 50-5191)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별표 3]

읍·면지역 쓰레기 봉투의 제작시양(제9조 제5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 미 시 문 장 쓰레기봉투(5~10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이 봉투는 읍·면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구 미 시 선 산 출 장 소 장 연락처 : 구미시 선산출장소 사회과(전화:480-5537)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 미 시 문 장 쓰레기봉투(5~10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국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상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읍·면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구 미 시 선 산 출 장 소 장 연락처 : 구미시 선산출장소 사회과(전화:480-5537)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별지 제1호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정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업종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 행 신 청 내 용	폐 기 물 의 종 류		
	대 행 신 청 기 간	199 년 월 일 부터 199 년 월 일 까지	
	대행신청 지역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 2호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지정서

내행지정 업 체	① 업 체 명			② 업 종 명	
	③ 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⑥ 대행업체 대상지역					
⑦ 폐기물 의 종류		⑧ 폐기물량	톤/일		
⑨ 대 행 시 정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미시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신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인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의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질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의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질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 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기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다만, 영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기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상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상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폐기물종		

신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함은 <u>일반폐기물</u>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u>폐기물</u> 중		
제3조(적용범위)①이조례는 <u>일반폐기물</u> 중 법제14조및영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①이조례는 <u>생활폐기물</u>과 <u>사업상폐기물</u> 중 <u>지점폐기물</u>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조례는 <u>법제12조</u>의 규정에 의한 <u>일반폐기물</u>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② <u>법제13조제1항</u>의 ... <u>폐기물</u>		
제4조(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시장은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u>법제17조</u> 규정에 의한 <u>일반폐기물</u>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의 <u>일반폐기물</u>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② (생 략)		제4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u>법제26조</u> 제1항 <u>폐기물</u> 1. <u>생활폐기물</u> ② (현행과 같음)		

신 구 조 준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1. <u>일반폐기물</u>의 수집·운반 대행신청서 [별지1호서식] ③제1항이 규정에 의한 <u>일반폐기물</u>의 수 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별지2호서식]에 의한 대행자정서를 발부 하며, 시장은 <u>일반폐기물</u> 수집·운반에 소 요되는 <u>비용을 일반폐기물</u>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u>일반폐기물 배출방법등</u>)①가정쓰레 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 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 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 다. ④재활용 가능쓰레기는 시장이 정하는 분 리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 다.	1. <u>생활폐기물</u> ③ <u>생활폐기물</u> <u>생활폐기물</u> <u>비음물 폐기물</u> 제5조(<u>폐기물 배출방법등</u>)①<u>생활폐기물</u> 또는 <u>사업장생활계폐기물</u> ④<u>재활용 가능폐기물</u>은

신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인
제6조(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자가처리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자체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경우라도 생활쓰레기는 시장이 처리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자체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법제7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계획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여 [별지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15일 이내에 부적정 통보를 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자체수집·운반·처리자는 [별지제5호서식]의 자체수집·운반·처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를 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위탁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적정여부	제6조(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조치)①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생산공정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제외한 식당, 기숙사, 사무실등에서 배출되는 성상이 생활계폐기물인 것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일반음쓰레기 봉투에 담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이 배출하지 않고 자가수집·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운반용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신 구 조 문 대 조 표

현행	개정안
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별시제5호서식]에 의거 위탁지점서를 다량 배출입자에게 교부하고 [별지제6호서식]의 위탁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내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사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제17조제2항제2호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업허가를 받은 시설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보받은 다량배출자는 별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7일이내에 계약서사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날력을 제작·배포하는등 일반폐기물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	한다. ④제3항에 의거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처리비는 [별표1]의 일시적다량배출물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생활폐기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 또는 홍보물달 생활폐기물 ②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

신 구조 준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면할 수 있다. 다만 재사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문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①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시장이 주체가 된 공공행사용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⑤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3]와 같다. ⑥ (신 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⑤제2항의 [별표3]과 ⑥시장은 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시장과 광고주와 별도 계약에 의한다.		
	제11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신 구조 둔 대 조 표

현	형	개	정	안
이 부과.징수)①법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 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 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의 부과.징수)①법제13조제3항의		 생활폐기물
제15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는 당해 지역에 일반폐기물 보관시 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생활폐기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당해 공 공지역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시 설 또는 용기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③제1항에 의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 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 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 스틱류는 시상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쓰러기 보관용기는 기계식상차 용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신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거 성 안
⑤시장은 <u>일반폐기물</u>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쓰레기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중용 <u>일반폐기물</u>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u>일반폐기물</u>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u>공중용 일반폐기물</u>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등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견적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u>일반폐기물</u>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자가 공중용 <u>일반폐기물</u>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	⑤ <u>생활폐기물</u> 제16조(공중용 <u>생활폐기물</u>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u>생활폐기물</u> 1. <u>생활폐기물</u> 2. <u>생활폐기물</u> 3. <u>생활폐기물</u>

신 구조 준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는 이션될 수 있다.				
제17조(권한위임)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장의 사무중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위임).....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u>일반폐기물</u> 이 직 성배출 지도		1. <u>생활폐기물</u> ...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u>일반폐기물</u> 의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 <u>생활폐기물</u> ...		
3. <u>일반폐기물</u> 의 수집·운반		3. <u>생활폐기물</u>		